

보도	필요	2081
방법	자료제공 특집 회견(설문)	
장	국	장

##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시설30310- 447	(전화: 731-6349 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중영구 10.5.3.1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 구		
시행일자	86. 7.		
보조 기관	도시계획국장 전 결	협 조 기 관	법무담당관 : 결 협조정제관 행정과장
	시설계획과장		
	가로계획2계장		
기안책임자	김영환(취병우)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 참조		
제목	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		
(제1안) 내부 결재			
1. 도정30312-18347(86.6.28) 및 도정30312-20204호(86.7.14)와			
관련입니다.			
2. 위호와 관련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석관동176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)			
에 대한 변경 결정 요청이 있어, 내용조사 검토한바,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			
지적승인(76.9.24)후 건축허가된 건물2동(허가일자 77.3.29 및 86.4.8)이			
저속되어 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, 제7조,			
2항에 의거 별안과 같이 변경 결정코자합니다.			
첨부 : 관련 일건서류 1책.		1375	

(제2안)

고

시 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제289호	1986. 8. 1.	제289호
도시계획법	도시계획법	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	도시계획법	도시계획법

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

1. 우리사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제12조 1항 동법시행령

제6조1항 1호 나목 및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제12조4항의

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6. 7.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2	8-12m	250m	석관동 176-74	석관동 384	
변경	"	"	"	"	"	"	일부구간 (L=70m) 폭원축소

\* 별첨 도면표시와갈음(도면생략)

(제3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제목 동 건

1. 우리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

합니다.

첨부 ;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

(제4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계재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계재 의뢰합니다.

가. 계재구분 : 고 시

나. 계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제12조

라. 계재내용 : 별첨 고시문

첨부 ; 고시문 사본 2부.

(제5안)

수신 성북구청장

참조 도시정비과장

제목 동 건

1. 도정30312-18347호(86.6.28)및 도정30312-20204(86.7.14)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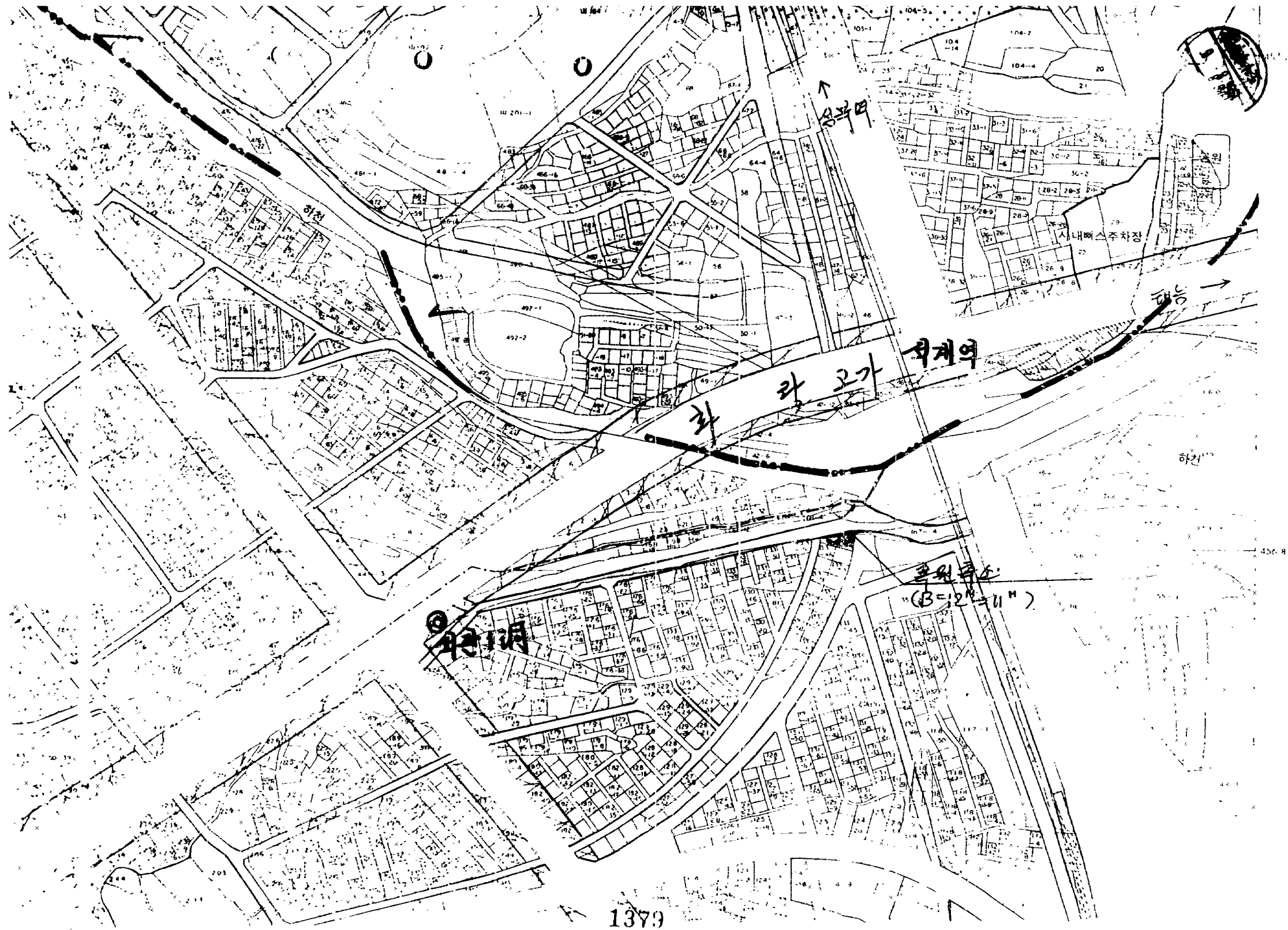
와 관련입니다.

2. 위호로 변경 결정 요청한 석관동176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

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면 정리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착오없

도록 하고, 도시계획법제13조에 의거 지적승인후 보고토록할것.

첨부 ; 고지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 끝.



1379